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
----------	----

제출년월일 : 2022. 9. 2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민선8기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구개편 및 군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현황

구 분	본청					의회		직속기관(2)		사업소(1)		읍·면		
	국	실	관	과	담당	과	담당	과	담당	기구	담당	읍	면	담당
당초	2	1	-	15	89	1	1	6	32	2	4	1	7	38
조정	2	1	1	16	88	1	2	7	32	1	4	1	7	43
변경	-	-	+1	+1	△1	-	+1	+1	-	△1	-	-	-	+5

- 부서신설(3) : 정책담당관, 회계과(재무과 분리), 축산농기계과
- 부서통합(1) : 교육체육과(체육) + 올림픽유산과 ⇨ 올림픽체육과
- 부서분리(1) : 재무과 ⇨ 세정과 / 회계과
- 부서폐지(1) : 농기계임대사업소

나. 과 단위 명칭 조정(10)

올림픽유산과	⇨	올림픽체육과	민원과	⇨	민원토지과
재무과(분리)	⇨	세정과/회계과	교육체육과	⇨	인재육성과
문화관광과	⇨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	경제과
환경위생과	⇨	환경과	진료지원과	⇨	의료지원과
농축산과	⇨	농정과	유통산업과	⇨	농산물유통과

다. 기구(본청) 직제 순서 조정

- 기획실
- 정책담당관 군수직속
- 행정지원국 행정과 → 올림픽체육과 → 복지정책과 → 가족복지과
→ 민원토지과 → 세정과 → 회계과 → 인재육성과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허가과 → 경제과 → 환경과 → 산림과
→ 안전교통과 → 건설과 → 도시과

라. 담당신설(17)

기획실(1)	⇨	공모사업	정책담당관(3)	⇨	총괄정책,사업발굴, 인구정책
회계과(1)	⇨	청사차량	인재육성과(1)	⇨	청소년교육
허가과(1)	⇨	공공건축	경제과(1)	⇨	에너지
안전교통과(1)	⇨	중대재해	농정과(1)	⇨	귀농귀촌
축산농기계과(1)	⇨	농업기계	군의회(1)	⇨	의정
면(5)	⇨	건설환경			

마. 담당 명칭변경(20)

부서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행정과	자치행정	행정	
올림픽체육과 (前 올림픽유산과)	평화기획	올림픽정책	
복지정책과	복지기획	복지정책	
가족복지과	아동청소년	아동보육	

민원토지과 (前 민원과)	민원행정	민원	
인재육성과 (前 교육체육과)	교육지원	인재육성	
	평생학습	평생교육	
허가과	건축	건축허가	
	산지관리	산지허가	
환경과 (前 환경위생과)	기후변화	환경관리	
건강증진과	정신보건	정신건강	
농정과 (前 농업축산과)	농업정책	농촌행정	
	농촌산업	농식품산업	
	농촌활력	농촌인력	
농산물유통과 (前 유통산업과)	친환경농업	친환경수출	
	수출지원		
축산농기계과	내수면	축수산환경	
	방역위생	동물방역	
읍면	건설	건설환경	
	산업개발	산업	
	찾아가는보건복지	찾아가는복지	

바. 담당페이지(11)

부 서	담 당(페이지)	비 고
기획실(2)	혁신통계, 서울사무소	
올림픽체육과(2)	기념사업, 청소년올림픽	
관광문화과(1)	문화시설	
허가과(1)	허가행정	
경제과(2)	기업유치, 전략산업	
산림과(1)	산림복지	
보건산업과(1)	감염병대응	
건강증진과(1)	건강생활실천	

사. 담당이관(16)

담당 이관	비고
· 가족복지과(아동청소년/분리 ⇨ 아동보육, <u>청소년교육</u>) → 인재육성과(1)	
· 세정과(계약, 경리, 재산관리) → 회계과(3)	
· 인재육성과(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체육시설) → 올림픽체육과(3)	
· 환경과(위생) → 보건정책과(1)	
· 농정과(축산정책, 축수산환경, 동물방역) → 축산농기계과(3)	
· 농정과(원예특작, 농산지원) → 농산물유통과(2)	
· 농산물유통과(농촌개발, 농촌협약, 농식품산업) → 농정과(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관계법령 발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2. 09. 07. ~ 09. 17.) : 의견 15건/붙임(입법예고 결과)
- 2) 규제심사 : 비규제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을“(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기획실, 행정과를”을 “기획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군수 밑에 정책담당관을 둔다.

제5조제1항 중 “올림픽유산과”를 “행정과, 올림픽체육과”로, “민원과, 재무과, 교육체육과”를 “민원토지과, 세정과, 회계과, 인재육성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올림픽·복지·민원·세무·교육·체육행정·체육시설”을 “인사·조직·올림픽·체육행정·복지·민원·세무·교육”으로 한다.

2.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를 “관광

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0호 중 “소비자보호, 기업유치”를 “소비자보호”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교통행정의 종합조정”을 “안전관리, 사회재난”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를 “”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진료지원과장”을 “의료지원과장”으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업축산과장·유통산업과장·기술지원과장”을 “농정과장·농산물유통과장·축산농기계과장·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정과

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나. 농촌산업·농촌개발·농촌활력에 관한 업무

다. 농식품산업에 관한 업무

라. 농업·농촌 6차산업화 관련 업무

마. 농촌협약에 관한 업무

제12조제3호(중전의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기계임대 및 지원 업무

제12조제3호(중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를 “축산농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통산업과”를 “농산물유통”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라목 및 바목을 각각 라목, 바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중전의 나목) 중 “농촌산업·농촌개발·농촌활력”을 “친환경농업”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중전의 바목) 중 “농촌협약”을 “식량작물”로 한다.

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마. 농특산물 수출에 관한 업무

제14조제1항 중 “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에 둔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
2. 상·하수도시설,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3.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
4.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5.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
6. 상·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7. 지하수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상·하수도, 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
제20조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을 “민원토지과장,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②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과장, 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민원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③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교육체육과장, 시설관리과장”을 “관광문화과장, 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⑥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⑦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⑧ 평창군 이효석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⑨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⑩ 평창군 향토문화유적 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⑪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⑫ 평창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⑬ 평창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축산과장”을 “관광문화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⑭ 평창군 브랜드·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축산과장”을 “관광문화과장, 경제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⑮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을 “경제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⑯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축산과장”을 “관광문화과장, 경제과장, 보건정책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⑰ 산림수도 평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중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축산과장”을 “관광문화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⑱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을 “회계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⑲ 평창군 물 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업축산과장”을 “관광문화과장, 환경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⑳ 평창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2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㉑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㉒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세정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㉓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제10조제4항 중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세정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㉕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무과장, 농업축산과장”을 “회계과장, 농정과장”으로 한다.

㉖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재무과장, 유통산업과장”을 “회계과장, 농산물유통

과장”으로 한다.

㉗ 평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을 “세정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㉘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업축산과장, 유통산업과장”을 “농정과장,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㉙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농축산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㉚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㉛ 평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㉜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유통산업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㉝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제2호 중 “유통산업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③④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유통산업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

③⑤ 평창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장, 담당관”으로 한다.

③⑦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장”을 “실·과장, 담당관”으로 한다.

③⑧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과장, 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소장, 담당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신 설></p> <p>① 부군수 밑에 기획실, 행정과를 둔다.</p> <p>② 기획실장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p> <p>③ 행정과장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u>올림픽유산과</u>,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u>민원과</u>, 재무과, 교육체육과를 둔다.</p>	<p>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 실·과장·담당관-----</p> <p>② <u>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①<u>군수 밑에 정책담당관을 둔다.</u></p> <p>② ----- 기획실을 -----</p> <p><삭 제></p> <p><삭 제></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행정과, <u>올림픽체육과</u>----- <u>민원토지과</u>, 세정과, 회계과, <u>인재육성과</u></p>

② 행정지원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신설>

2. 3. (생략)

4. 평화 관련 사항

5. ~ 17. (생략)

18. 그 밖의 올림픽·복지·민원·세무·교육·체육행정·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경제건설국에 문화관광과, 허가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안전교통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② 경제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략)

10.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기업유치,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 20. (생략)

21.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

② -----
-----.

1. (현행과 같음)

2.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삭제>

5. ~ 17. (현행과 같음)

18. ----- 인사·조직·올림픽·체육행정·복지·민원·세무·교육-----

제6조(경제건설국에 두는 과) ① ----- 관광문화과, 허가과, 경제과, 환경과-----
-----.

② -----
-----.

1. ~ 9. (현행과 같음)

10. ----- 소비자보호-----

11. ~ 20. (현행과 같음)

21. 안전관리, 사회재난 -----

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22. ~ 27. (생략)

제8조(의료원장 등) ① 의료원장 및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진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지소에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생략)

제11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 및 농업축산과장·유통산업과장·기술지원과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신설>

--

22. ~ 27. (현행과 같음)

제8조(의료원장 등) ① -----

----- 의료지원과장 -----

보건진료소장-----.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 등) -----
농정과장·농산물유통과장·축산농기계과장·기술지원과장-----

-----.

제12조(소관사무) -----
-----.

1. 농정과

- 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 나. 농촌산업·농촌개발·농촌활력에 관한 업무
- 다. 농식품산업에 관한 업무
- 라. 농업·농촌 6차산업화 관련 업무
- 마. 농촌협약에 관한 업무

1. 농업축산과

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다. 식량작물에 관한 업무

라. 친환경농업에 관한 업무

마. ~ 아. (생략)

<신설>

2. 유통산업과

가. (생략)

<신설>

나. 농촌산업·농촌개발·농촌활력에 관한 업무

다. 농특산물 수출 및 농식품 산업에 관한 업무

라. (생략)

마. 농업·농촌 6차산업화 관련 업무

바. 농촌협약에 관한 업무

3. (생략)

제14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

3. 축산농기계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가. ~ 라. (현행 마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

마. 농기계임대 및 지원 업무

2. 농산물유통

가. (현행과 같음)

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라. 친환경농업-----
-

<삭제>

바. (현행 라목과 같음)

마. 농특산물 수출에 관한 업무

다. 식량작물-----
-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4조(설치) ① -----

----- 상하수도사업

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

나. 상·하수도시설,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

라.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마.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

바. 상·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사. 지하수에 관한 업무

아. 그 밖에 상·하수도, 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

2. 농기계임대사업소

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

② -----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에 둔다.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

2. 상·하수도시설,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3.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기업 운영

4.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5.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원지 관리

6. 상·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7. 지하수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상·하수도, 분뇨처리와 관련된 사항

가. 농기계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유지관리

다. 임대농기계 사용 부과·징수

라. 영농기계화 기술보급 및 교육

마. 신기술 농기계 보급

바. 그 밖에 농기계와 관련된 사항

제20조(설치) ① (생략)

② 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와 같다.

제2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2-----.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④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과 행정과장 이영배
연락처	(033) 330 - 2210

입 법 예 고 결 과

제출자	제출의견	비고
· 올림픽유산과장	· 2024청소년동계올림픽 준비 등 업무수행 및 조직위 협조체계 지속 구축을 위해 청소년올림픽 담당 현행유지	부서존치 (현행유지)
⇒ (미반영) 한시적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기구로 추후 업무량 확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한시기구 또는 TF팀 운영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는 입법예고안 대로 담당을 폐지하고 해당업무 수행은 올림픽정책담당으로 조정		
· 농업기술센터소장	· 사무에 대한 추진정책 공유와 업무이해도 증대를 위해 센터 내 과장직위 복수직렬 조정 ⇒ 농업사무관, 농촌지도관	직렬조정
⇒ (미반영)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항으로 미반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 민선8기 군수공약 사항 수행 및 평창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 신설(농정과 귀농귀촌) 및 부서조정(농정과 농촌인력 ⇒ 축산농기계과) 필요	부서신설
⇒ (일부반영) 제출의견을 일부반영하여 관련부서 신설 / 부서조정은 업무연관성 고려 미반영		
· 기술지원과장	· 상급기관인 강원도농업기술원 및 농촌진흥청의 업무 성격 유지를 위해 담당명칭 현행유지(기술지도 ⇒ 지도기획)	명칭변경
⇒ (반영)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담당 명칭 현행유지(지도기획)		
· 문화관광과장	· 문화시설 담당 폐지 시 문화예술담당에서 시설관련 업무수행이 불가하며, 인력관리 및 업무과중이 예상되어 현행유지(문화시설담당 존치)	부서존치 (현행유지)
⇒ (미반영) 유사업무기능 통폐합을 통해 업무효율성 증대(문화시설 활성화 방안 제고 등)를 위한 개편방향으로 미반영		
· 건설과장	· 잦은 담당명칭 변경으로 민원인 불편예상 현행유지 (자연재난 ⇒ 재해예방)	명칭변경
⇒ (수용)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담당명칭 현행유지(재해예방)		
· 보건의료원장	· 상위법 명칭 통일 변경요청(보건진료원 ⇒ 보건진료소장)	명칭변경

제출자	제출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서 및 담당명칭 현행유지 <table border="1"> <thead> <tr> <th>조례안</th> <th>제출의견안</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보건사업과</td> <td>보건정책과</td> <td>현행유지</td> </tr> <tr> <td>방문보건</td> <td>지역보건</td> <td>현행유지</td> </tr> <tr> <td>감염관리</td> <td>감염병관리</td> <td>현행유지</td> </tr> <tr> <td>응급의료</td> <td>의료관리</td> <td>현행유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원내 과장직위 직렬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장직위</th> <th>조례안</th> <th>제출의견안</th> </tr> </thead> <tbody> <tr> <td>보건정책과</td> <td>행정·보건</td> <td>행정·보건·간호·의기</td> </tr> <tr> <td>의료지원과</td> <td>보건·간호·의기</td> <td>보건·간호·의기·진료</td> </tr> </tbody> </table>	조례안	제출의견안	비고	보건사업과	보건정책과	현행유지	방문보건	지역보건	현행유지	감염관리	감염병관리	현행유지	응급의료	의료관리	현행유지	과장직위	조례안	제출의견안	보건정책과	행정·보건	행정·보건·간호·의기	의료지원과	보건·간호·의기	보건·간호·의기·진료	직렬조정
조례안	제출의견안	비고																								
보건사업과	보건정책과	현행유지																								
방문보건	지역보건	현행유지																								
감염관리	감염병관리	현행유지																								
응급의료	의료관리	현행유지																								
과장직위	조례안	제출의견안																								
보건정책과	행정·보건	행정·보건·간호·의기																								
의료지원과	보건·간호·의기	보건·간호·의기·진료																								
<p>⇒ (일부반영) 보건진료소장, 부서 및 담당명칭 변경은 제출의견대로 반영 / 보건의료원내 과장직위 직렬조정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항으로 미반영</p>																										
· 재무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량 고려, 운전직 정원 현행유지(25명) 및 직렬별 형평성과 소수직렬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 상향 조정(6급(+1), 7급(+3), 9급(△3)) 	직급조정																								
<p>⇒ (일부반영) 제출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7급+1, 9급△1 조정</p>																										
· 재무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시군 담당부서 고려, 고향사랑기부금 대응부서 조정(재무과 ⇨ 정책담당관) 	사무분장																								
<p>⇒ (미반영) 타시군 해당업무 수행부서는 자치행정, 세외수입, 세정, 인구통계, 부과팀 등 시군 여건마다 다른 상황으로 개편 시 우리군 업무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것으로 미반영</p>																										
· 환경위생과장 · 한국의식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원인 불편 및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이 예상되어 위생팀 환경과로 현행 유지(보건의료원 ⇨ 환경과) 	부서존치 (현행유지)																								
<p>⇒ (미반영) 위생업무 기능에 보건기능을 강화하고자 한 사항으로 담당직원 업무인수인계, 교육 등을 통해 현행과 같이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미반영</p>																										
· 환경위생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사무분장 조정(가축분뇨 업무 환경과 ⇨ 축산농기계과) 	사무분장																								
<p>⇒ (미반영) 축산농기계과 신설 부서로 추후 업무여건, 업무성격(단속/지원 등) 등 검토후 조정여부 결정</p>																										

제출자	제출의견	비고
· 환경위생과장	· 비점오염저감사업 중점 관리지역인 진부면, 대관령면의 면장직위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환경사무관 복수직렬 지정의견	직렬조정
⇨ (미반영)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항으로 미반영		
· 산림과장 · 임업후계자협회장 · 산림조합	· 평창군 산림을 활용한 장기 미래 발전을 위해 조직축소 보다는 조직확대 요청의견	부서존치 (현행유지)
⇨ (일부반영)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산림관리담당 존치 / 유사 업무기능 통폐합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한 개편방향을 고려하여 산림복지담당 존치는 미반영		
· 평창군의회	·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및 의회업무 수행을 위해 정원유지	정원조정
⇨ (반영)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정원조정		